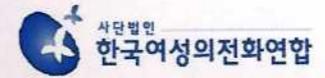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Mc1.31

성폭력을다시쓴다-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누적

여성인권운동사례집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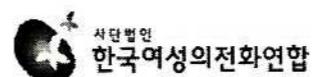
이 책은 2003년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 제작하였습니다

Mc1.31

성폭력을다시쓴다-객관성,여성운동,인권 부록

여성인권운동사례집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이 책은 2003년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사례집을 내면서

본 사례집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출판된 「성폭력을 다시 쓴다-객관성, 여성운동, 인권」의 부록이다. 한국여성의전화의 25개 지부, 1개 지회가 전국에서 20년간 활동해온 인권운동 사례는 수없이 많으나 그 기록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상담일지 형태로 각각의 지부들에 보관되어 있었다. 여성인권운동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던 운동 사례들이 잊혀져 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던 중 본 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중요한 인권운동 사례들을 정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작업을 시작하고 보니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바쁜 활동시간을 쪼개어 틈틈이 기록을 뒤져 정리를 해준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전국에서 올라 온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편집해준 김현희 강화여성의전화 전 사무국장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인권활동의 기록방식이 연구되고, 정착될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본 사례집이 앞으로의 인권활동을 위한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2003. 12. 3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

* 차 례

사례집을 내면서

제1부 아내구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단지 아내라는 이유로

1. 가해자를 실명공개한 정선호사건(인천여성의전화) • 3
2. 파렴치한 변호사의 아내강간사건(서울여성의전화) • 7

아내 구타의 종착역

3. 무조건 아내를 때려 죽게 한 구타남편사건(수원여성의전화) • 10
4. 이혼하기로 합의한 아내를 살해한 구타남편사건(안양여성의전화) • 11
5. 의처증으로 아내를 살해한 구타남편사건(광주여성의전화) • 13

폭력피해여성의 정당방위와 구명운동

6. 최초의 정당방위 논쟁을 불러일으킨 남씨 구명운동(서울여성의전화) • 15
7. 가정폭력방지법제정운동을 촉발시킨 이씨 구명운동(서울여성의전화) • 16
8. 구타남편 살해하고 자수한 임씨 구명운동(광주여성의전화) • 18
9. 구타남편 살해하고 자수한 김씨 구명운동(안양여성의전화) • 19
10. 30년간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하씨 구명운동(부천여성의전화) • 21
11. 딸을 구타하는 사위를 살해한 이할머니 구명운동(서울여성의전화) • 23

자녀도 폭력의 피해당사자

12. 어머니를 구타한 아버지를 살해한 영수군 구명운동(서울여성의전화) • 24
13. 온가족을 구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남매 구명운동(전주여성의전화) • 26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황혼이혼

14. 죽기 전에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이할머니 이혼청구소송
(서울여성의전화) • 29

15. 50년을 죄없이 장기수 생활을 해온 김할머니 이혼청구소송

(서울여성의전화) • 31

제2부 일상을 위협하는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

16. 어린이 납치, 성폭력 살해사건(광명여성의전화) • 36
17. 미 군속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사건(대구여성의전화) • 38
18. 이웃집 남자에 의한 남자 어린이 성추행사건(부천여성의전화) • 40

근친성폭력

19. 친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사건(영광여성의전화) • 42
20. 친아버지에 의한 세자매 성폭력사건(인천여성의전화) • 44

학교성폭력

21. 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사건(청주여성의전화) • 46
22. 특기 적성교사에 의한 남자 어린이 성추행사건(부천여성의전화) • 49
23. 초대 교수 제자 강간사건(천안여성의전화) • 50
24. 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사건(김포여성의전화) • 53
25. 학교성교육을 통해 드러난 학교성폭력사건(인천여성의전화) • 56
26. 교여종교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서울여성의전화) • 58

장애인 여성 성폭력

27.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의한 경계성 정신지체여성 성폭력사건
(안양여성의전화) • 60
28. 보호가정에서 벌어진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사건(부산여성의전화) • 62
29. 이웃남자에 의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집단성폭력사건(강릉여성의전화) • 66

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성폭력

30. 보육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서울여성의전화) • 69

여성의 일할 권리를 위협하는 직장 내 성폭력

31. 아파트 관리주임에 의한 환경미화원 성희롱사건(성남여성의전화) • 72
32. 대형 할인매장의 여성근로자 ‘군 서비스교육’ 동원사건(안양여성의전화) • 75
33. 부동산 중개사에 의한 사무원 성폭력사건(강화여성의전화) • 79
34. 흉용역경비에 의한 여성노동자 성추행사건(울산여성의전화) • 80
35. 주식회사 여성노동자 성희롱사건(천안여성의전화) • 82

성매매된 여성들 :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을 넘어서

36.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밝혀진 대구자갈마당 업주에 의한 성매매사건
(대구여성의전화) • 85
37. 유흥업소의 성매매 피해여성 구출기(익산여성의전화) • 87
38. 티켓다방으로 유입된 10대 가출청소년 구출기(군산여성의전화) • 89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39. 전투 경찰에 의한 여대생 추행사건(서울여성의전화) • 92
40. 경찰관에게 강간당한 임신부 자살사건(서울여성의전화) • 94
41. 경찰에 의한 다방 종업원 성폭력 사건(서울여성의전화) • 95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42. 강간범의 혀를 깨물어 과잉방어로 고소당한 박씨 사건(서울여성의전화) • 98
43. 강간 고소 후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 당한 사건(안양여성의전화) • 100
44. 성폭력 가해교수들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대구여성의전화) • 102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소록 • 105

제1부 아내구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단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1. 가해자를 실명 공개한 정선호 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김영미(가명) - 아내
- 가해자 : 정선호 - 남편

2) 사건 내용

2000년 4월 8일 저녁 7시 경, 남편 정선호는 술을 약간 먹은 상태(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과 안주를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선호는 아이들을 각각 서로 다른 이웃들에게 보내어 재워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현관문을 철사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 아무 말도 없이 아내 김영미씨의 옷을 벗겼다. 정선호는 곧바로 뺨지를 이용하여 철사로 양쪽 엄지손가락끼리 묶어서 운동기구에 고정시켰다. 그러나 김영미씨는 주위의 안목과 아이들을 생각하여 반항을 하지 못했다.

그 후 정선호는 김영미씨의 온몸을 발길질을 해대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리고 가스에 커피포트를 올려 물을 끓인 후 가슴과 얼굴 및 하복부에 한 차례 부은 후 커터 칼로 얼굴과 하복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밀하게 그었다.

평소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정선호는 아내의 계속되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재차 얼굴의 왼쪽 귀에서부터 입술까지 상악골 부분을 뼈가 보이고 신경조직이 파손될 정도로 깊이 긋고 그 상처에서 피가 흐르자 빨아먹었다. 다시 끓는 물을 얼굴과 몸 전체에 끓고 전기 인두와 담배 불로 얼굴과 눈 부위, 하복부 및 가슴을 수없이 지졌다. 김영미씨가 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차라리 죽어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다고 하자 미리 준비해 온 술을 억지로 먹인 후 찬물을 상반신에 끼얹은 뒤 전선의 피복을 벗겨 전기콘센트에 연결하여 김영미씨의 몸에 전류가 흐르게 하였다.

김영미씨가 온몸이 오그라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하자 정선호는 또 다시 전기충격을 가하여 김영미씨는 기절을 하고 말았다. 정선호는 김영미씨에게 물을 끼얹어 정신이 들게 한 후 뺨지로 생이빨을 잘랐으며

이에 다시 기절한 김영미씨의 음부 주위 및 하복부를 부엌칼로 찌르고 휘저어 소장을 천공시킨 상태에서 2-3시간 방치하여 복막염이 발생하였다. 김영미씨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자 정선호는 119에 신고하였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정선호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것이 4월 8일 자정 무렵부터 9일 새벽 2~3시까지 진행된 악동과 같은 사건이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2000. 4. 8. ~ 2000. 12. 28.)

정선호는 현장에서 연행되었고 김영미씨는 병원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생존률은 20%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고 상해일 경우 의료보험의 적용이 안되어 피해자 가족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치자 김영미씨의 동생과 사촌 여동생 부부가 인천여성의전화(이하 본회)를 방문 상담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우선 본회는 피해자 거주지 구청의 가정폭력상담소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연락하여 의료보험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선호는 생활보호대상 2급이었고 병원에서는 상해는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하여 의료보험의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구청에 요청하였다. 본회는 긴급하게 '정선호 사건' 처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 사건 지원을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사건 명칭으로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가해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정선호 사건'으로 한다. 둘째 피해자가 위급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진정될 때까지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보류한다. 세째 피해자가 안정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언론에 공개하여 가정폭력의 심각함을 알리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요구하는 공개서명운동과 피해자 돋기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구청의 사회복지 지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최우선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 계속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4월 14일부터 법률 지원에 들어가 피해자 가족을 도와 검사에게 보내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현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요구하여 가족들이 피해자의 현재 모습을 찍어서 검찰에 제출하였다.

한편 지역의 구청 사회복지사, 피해자 거주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삼산복지관 관장이 본회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돋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삼산복지관에서는 부녀회를 통하여 바자회를 열어 모금운동과 거리서명을 벌이고 피해자를 1급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계

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며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던 김영미씨가 가족을 통하여 본회와 만나기를 원한다고 전해왔다. 김영미씨는 자신을 도우려는 본회에 감사하며, 자신의 피해사실과 사진을 언론에 보도하여 끔찍한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고통스럽지만 언론보도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언론보도가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하였다. 4월 24일 인천일보에 첫 보도가 나가고 매주 월요일마다 경과를 보도하기로 하였다. 4월 30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최로 열린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선포식에 참가하여 피해자 사진전과 서명운동(420명)과 모금운동을 벌였다. 또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피해자 사진전과 서명운동(820명), SBS 8시 뉴스, KBS 2TV 뉴스투데이, iTV, ICN, ohmynews 등에 캠페인 활동이 보도가 되었다. 언론들이 보도경쟁을 하면서 SBS와 KBS가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를 직접 취재하여 피해자가 충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방송사는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함으로써 선정적인 보도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후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사진전과 서명 모금운동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용기를 많이 얻게 되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보도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5월 6일 본회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진영광 변호사가 이혼과 친권 포기를 위한 무료 변론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가해자 정선호는 기소되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정선호의 친권은 박탈되었다.

그런 중에도 많은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은 계속되어 언론 보도(MBC '시사매거진 2580',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여성신문, 한겨례신문)와 성금이 담지하였다.

이렇게 여론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홈페이지와 오마이뉴스를 통한 온라인 홍보였다. 마침 본회는 홈페이지를 막 만든 참으로 시험운영도 해보기 전에 이 사건의 피해사진과 경과를 게시하는 한편 재판이 모두 끝나고 피해자가 자립할 때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업데이트 하였는데 홈페이지 방문수가 하루 수백 건이 넘었고 외국의 교포들의 방문도 많았으며 대부분 온라인 서명과 격려와 가해자처벌요구의 글을 남겼다. 본회는 온라인서명을 모두 출력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라면박스로 네 박스가 넘는 분량(인터넷 서명자

12,000명, 거리 서명자 1,600명)이었다. 또 오마이뉴스가 이 내용을 펴다 보도하자 순식간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두달간 모두 1200만원을 모금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홈페이지로 들어온 온라인 성금이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김영미씨는 조금씩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얼굴에는 흉터가 남아 의사는 성형수술을 권하고 있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류하였으며 자궁 부위는 겨우 소변보는 기능만 회복한 상태였다.

6월 10일 '정선호 사건 1차 심리가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정선호는 이후 항소심까지 계속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흥기를 사용한 것이나 끓는 물, 전기 등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자신의 진술마저 몇 차례에 걸쳐 번복을 하는 등 비열한 태도를 보였다.

1심에서 정선호는 구형대로 15년형 판결을 받았으며, 판사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기 보다는 변명하고 합리화하기에 급급하며 119에 신고한 행위도 살인죄 등의 죄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여진다며 그의 행위가 정상을 넘어선 잔인한 수법과 함께 수감 중에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등의 내용에서 보여지는 면책을 유도하는 의도 등을 감안하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판결하였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적용에도 피고의 유래 없는 잔인한 행위와 이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사회에 끼칠 해악을 감안하고 이미 가정이 유지되기에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 가정이 지속될 수 없음을 판단하여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선호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피고의 정신감정 결과 지능이 바보와 보통사람의 경계선 수준"이라며 정상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정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하였다.

본회에서는 "바보와 보통사람의 경계수준(?)"이라는 재판부의 견해에 대해 동조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가족들의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 대신 성금을 낸 생면부지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은 카드와 함께 모금액을 전달하여 아이들과 살 수 있는 방을 얻게 함으로써 자활기반을 만들어주었다. 이에 김영미씨는 본회 홈페이지에 직접 감사의 글을 올려 마침내 가정폭력의 피해를 딛고 당당하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었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은 처음으로 가해자의 이름으로 공개된 사건으로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과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심각함을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성금과 인터넷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본회는 네티즌들의 도덕성과 적극성에 깊이 감명받았으며 온라인 공간은 가상공간이 아니라 현실세계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본회가 정보화 공간에서 여성운동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정보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피해자 인권지원에 있어 지원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인 지지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최우선적으로 저소득수급자의 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거주지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신속한 접근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하여 불안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피해자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일도 병행하였다. 피해자 자녀들이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갓집이 있는 곳으로 전학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불안한 심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에게 사실을 알리고 주의깊은 보살핌을 요청하였다. 피해자와 자녀들의 바람대로 친권 포기와 이혼재판을 신속히 진행한 것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모금활동을 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이다. 피해자 지지체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회복과정을 돋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교회의 가출청소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하면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정신지체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2. 파렴치한 변호사의 아내강간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김미자 (가명) - 31세, 결혼1년, 전업주부
- 가해자 : 이수호 (가명) - 32세, 변호사

2) 사건내용

김미자씨는 2000년 결혼상담소를 통한 중매로 당시 사법연수원 2년차이던 이수호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후 이수호씨는 ‘자신이 진 빚 7천만원을 갚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등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며 부인 김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또 “가슴이 작아 비키니도 못 입겠다”며 가슴확대수술을 받을 것을 강요했고, 심지어 수술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김씨를 주먹으로 때려 봉합수술부위가 터지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결혼 1년간의 남편에 의한 폭행과 성학대에 시달리다 별거에 들어갔으며, 남편의 처벌과 이혼을 결심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2001. ~ 2003. 1.)

1366을 통해 사건 접수, 피해자와 부모가 서울여성의전화(이하 본 회)를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하였다. 피해자는 남편이 강제로 가슴확대수술을 받게 하는 등, 남편의 성적 학대와 구타가 심해 형사 처벌과 이혼을 원하였다.

본 회는 사건을 고소하여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약 16개월간 지속적인 면접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돋고, 남편의 폭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돋고 자존감 향상을 도왔다. 수사, 재판과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심리적 지원을 했다.

또한 서울청 여성청소년계의 담당 형사가 본 회를 방문하여 상담원이 동석한 가운데 법률자문을 해주면서 폭행, 상해 뿐만 아니라 강간죄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했다. 용기를 얻은 피해자 김씨는 서울지방검찰청 여성범죄전담검사실에 남편을 폭행죄와 강요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이혼을 청구하였다. 강간죄 고소는 아내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강간죄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되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아쉽게도 제외하였고, 가해자 이씨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본 회는 검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방청하여 모니터 하는 등의 법정지원을 하였다. 상대가 변호사라는 이유로 여러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꺼렸기 때문에 본 회의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

한편으로는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하였다. ‘아내강간도 성폭행이다’라는 주제로 거리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아내강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작업을 하였다. 사건 내용이 MBC ‘우리시대’ , ‘시사매거진2580’ , ‘아주 특별

한 아침’ 등을 통해 방송되었고, 각 일간지 등에 보도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3단독 담당 판사는 남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기간 내내 이씨는 공소사실을 부인 하지만 자신도 검찰 수사 당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씨가 초범이고 폭행 횟수는 많지만 실제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결혼 까지 한 성인이 유방확대수술 강요는 거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담당 판사는 더욱이 “○씨의 직업이 변호사인 점도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이혼 건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은 “상습폭행 등 가정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과 부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의 반소(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김씨는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유죄 판결이 났다는 것에 만족하고, 심리적 안정을 많이 되찾았으며, 대학원 진학 등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씨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2003년 1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소송이 종결되었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의 의의는 1366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신속하게 면접상담으로 연계하여 아내강간을 이슈화한 점이다. 비록 내담자가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폭행죄, 강요죄의 유죄판결은 아내에 대한 성적 강요와 학대가 범죄임을 분명히 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채 일반 상습 폭행 사건보다 가볍게 처벌하였고, 현직 변호사라는 점, 수술강요를 거부할 수 있었다 등을 정상참작 요인으로 꼽은 것은 가정폭력과 아내성학대의 심각성과 그 특성을 인식하지 못한 판결로 여겨진다.

아내구타, 죽음에 이르기까지

3. 무조건 아내를 때려 죽게 한 구타남편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안혜정(가명) - 아내
- 가해자 : 이경수(가명) - 남편, 42세

2) 사건내용

안산시 ㅂ동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안혜정은 2001년 5월 1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남편에 의해서 복부와 음부를 발로 채이고 머리채를 잡힌 채 머리를 바닥에 찍히고 주먹으로 온몸으로 두들겨 맞았다. 말리는 주민들을 피하여 가해자 이경수는 가게 문을 잠그고 5시간여를 계속적으로 구타하였고, 119 소방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된 후 수술도 받지 못한 채, 피해자 안씨는 뇌사상태에서 산소 호흡기로 연명하다가 3일 후에 사망하였다.

피해자 사망 후, 경찰이 아내가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한 화풀이로 밀쳤던 것이 벽에 머리가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사건을 축소, 조사하였음을 마을 주민들이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안산시 ㅂ동 주민들은 평소 아내구타 사실을 알고 있던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수원여성의전화(이하 본 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ㅂ동 주민들과 본 회는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단순 과실로 인한 상해치사가 아닌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행위임을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재판부에 촉구하게 되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2001. 7. 4. ~ 2002. 1. 11.)

본 회는 수원지역의 47개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성명서를 내고, 수원지방법원장 앞으로 여성의전화 9개 지부의 서명과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차 공판까지 법원 앞 퍼켓팅, 법정 참관을 실시하였으며, MBC PD 수첩에 '가정폭력,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는 등 계속적인 투쟁을 하였다.

2002. 1. 11 서울 고등법원은 가해자에게 7년형을 언도하였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은 엄연한 살인행위였음에도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상해치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여러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여론 작업을 벌였으나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못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여론 작업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나 본 회는 이 사건이 살인사건임을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작업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

4. 이혼하기로 합의한 아내를 살해한 구타남편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남미숙(가명) - 아내, 38세
김은경(가명) - 남미숙의 친구
- 가해자 : 박동진(가명) - 남미숙의 남편, 40세

2) 사건내용

결혼 13년째인 남미숙은 충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남편은 결혼 생활동안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여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친정오빠가 하는 건축일을 맡겨주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으나 성실하지 못해 친정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성격이 포악하여 종종 싸움을 하기도 하여 현재는 친정과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었다.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내담자는 컴퓨터를 배우게 되었고 시댁 조카로부터 인터넷을 배우고 채팅하는 법을 배웠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남편은 사람이 났다고 더욱 더 내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조금만 의심이 가면 구타를 하였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남미숙은 2001년 11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친정에서 내담자의 이름으로 사주었던 집을 명의이전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

서에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내담자를 방에 가두고 긴 머리를 자르며 심하게 구타하여 남미숙씨는 도망나오게 되었다.

남미숙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김은경씨 집에 숨어 지내며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리가 잡히면 아이들도 데리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내담자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혈안이 되어 내담자를 찾았다고 친정으로 협박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남미숙씨는 자신의 피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불리하게 작용될까 걱정이 되어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혼하기를 원하였다.

본 회는 남편에게 가출한 이유가 남편의 폭력에 의한 피신임을 알리는 내용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친정 주소에서 발송하도록 권유하고 쉼터에 대한 정보를 주었으나 친구 집이 안전하다고 하여 쉼터 입소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2002년 2월 15일,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서 만나기로 한 날 가해자는 내담자가 피신해 있던 친구집을 침입하여 남미숙씨를 살해하고, 그 친구까지 상해를 입혔다.

3) 경과 및 인권운동운동과정 (2002. 3. ~ 2002. 5.)

2002년 3월 피해자의 친구인 김은경씨가 상해를 당한 후 치료를 마치고 본 회에 피해자 사망 사실과 자신도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려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이미 검찰 조사가 끝나고 1차 심리가 진행중이었다.

재판은 그동안의 심한 가정폭력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한 부부싸움 끝에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본 회는 즉각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인을 지원하여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기보다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의적인 살인임을 주지시켰다. 가해자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4) 성과와 의미

남편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중이던 내담자가 구타남편에 의해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본 회는 내담자에게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을 할 당시 내담자의 당당함만 보고 피해자의 상황을 오판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피해자의 상황을 깊이있게 이해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였다.

다행히 사건을 역추적하여 경찰 기록 확인, 증인에 대한 지원 등 신속하고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회의 의견서를 담당판사가 받아들여 가해자를 엄중처벌할 수 있었다. 가해자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다.

본회에서는 그 해 5월 ‘가정폭력없는 평화의달 선포식’에서 고인을 위한 위령제를 치루었다.

5. 의처증으로 아내를 살해한 구타남편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진 말숙(가명) - 아내, 69세
- 가해자 : 조 태우(가명) - 남편, 74세

2) 사건내용

2002년 5월, 남편 조태우는 평소 의처증이 심하여 “동네 할아버지와 몇 번 불어 먹었냐”며 아내 진말숙씨를 추궁하는 등 폭언을 서슴지 않고 술을 먹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진씨는 그 동안 몇 번 집을 나와 자녀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남편이 그때마다 쫓아와 행패를 부려 다시 끌려오곤 하였다.

사건이 나던 날도 남편의 구타가 시작되어 동네 파출소에 달려가 신고하였다. 파출소에서 광주여성의전화(이하 본회)로 연계를 해주어 진씨는 언니와 같이 찾아와 면접상담을 하게 되었다.

진씨는 도저히 남편과는 살 수 없다고 무료 양로원에 가기를 희망했지만 남편과 자녀들이 있어 양로원 입소는 되지 않아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자녀와 연락했으나 자녀의 도움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그 후 남편이 계속 본 회로 찾아와 다시는 부인을 괴롭히지 않겠다며 각서까지 쓰며 사정을 하였으나 상담한 결과 아직 의처증 증세가 심하였고 아침부터 술 냄새를 진동하여 같이 살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진씨도 돌아가길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씨는 남편이 주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잘못을 많이 뉘우치는 것 같으니 한번 믿어보겠다며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씨는 다시 언니와 같이 본 회로 찾아와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혼을 해야겠다며 쉼터에 재입소하였다. 시골로 이사한 후 술은 많

이 자제하며 신체적 폭력은 줄었으나 남편이 갖은 억지소리를 하며 말끌마다 더러운 소리를 하는 등 언어폭력은 여전하여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하였다. 결국 협의이혼 서류를 준비하여 남편과 연락하여 상담을 하였고 남편이 진씨 명의로 된 통장(1,500만원)을 진씨에게 주고 이혼 후 2년 이내 재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 후 통장 만기일이 가까워오자 진씨는 전세방을 얻어 쉼터에서 퇴소하였다. 추석 당일인 9월 23일 이사한 전세방에서 진씨는 집으로 찾아온 남편의 칼에 찔려 살해당하고 남편은 구속되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 진행과정 (2002. 9. ~ 2002. 12.)

할머니의 살해 사건 신문기사를 접하고 본 회는 경찰서에 찾아가 진상을 파악하고, 경찰서에 그 동안 상담했던 상담일지와 쉼터거주 확인서, 남편이 쓴 각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알리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수사해 줄 것을 공문으로 보냈다.

그리고 각 지방신문에 인터뷰기사를 실었으며, KBS 아침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에 남편의 의처증을 다룬 프로그램에 할머니 사건을 소개하였다. 가해자는 현재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다.

4) 성과와 의미

피해자는 결혼생활 40년 동안 계속된 남편의 폭언과 폭력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다가 일흔이 다되어 결국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마당에 결국 남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은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지면 고쳐질 것이라는 통념, 이혼하면 폭력이 중단될 것이라는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본 회 또한 피해자가 이혼하여 독립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간파하였다.

의처증은 정신적 질병이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의처증에 의한 폭력에 있어서 이혼은 가해자의 의처증을 강화 할 수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폭력피해여성의 정당방위와 구명운동

6. 최초의 정당방위 논쟁을 불러일으킨 남씨 구명운동

1) 인적사항

- 피해자 : 남숙희(가명) - 당시 32세, 주부
- 가해자 : 김민석(가명, 사망) - 남편

2) 사건내용

1991년 2월 5일, 상습적으로 자신을 구타하던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임신 4개월이었던 남숙희씨는 사건 당일 남편에게 폭력(옆구리와 배를 발로 차이고 머리채를 휘어 잡힘)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아이를 사산했다. 당일 남씨는 구타가 계속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넥타이로 남편 김민석의 목을 감으며 함께 쓰러졌다. 남편이 조용해지자 함께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남편이 숨진 것을 알게 되었다.

남씨는 결혼해주지 않으면 친정 식구들을 몰살시키겠다는 협박 때문에 결혼했으나 결혼 후 10여년간 남편의 구타에 시달렸다. 남씨는 극심한 구타에 못이겨 가출도 해보았지만 남편이 친정을 협박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폭력을 감내하며 살아야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1991. 2. 5. ~10.)

한국여성의전화(이하 본 회)는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중인 남씨를 면회, 결혼생활과 남편 및 그 자신의 성장배경에 대해 들었다. 남편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집안에서 성장했고 남편 역시 심하게 매질을 당하며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회는 남씨의 정당방위를 확신하고 다양한 형태로 구명운동에 나섰다. 남씨 개인의 상담은 물론 정당방위 판례를 얻기 위해 1심, 2심 모두 관련 검사 및 판사 앞으로 진정서를 넣었고 가족의 반대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홍보를 해냈다. 이러한 구명운동에 힘입어 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4) 성과와 의미

남씨 사건은 한국여성의전화가 구타 남편 살해사건으로는 최초로 대대적인 구명운동을 벌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남편의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리던 아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구타자를 살해한 경우로, 사회가 아내구타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정부가 '범죄자' (구타 남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외면하는 동안 가정 안의 폭력은 구타자 살해라는 극단적 형태로 발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살인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요컨대 정당방위적인 살인이었다.

일찍이 아내구타가 강력 범죄로 발전할 위험을 경고해 온 본 회는 즉각 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의 전말을 올바르게 파악, 경찰과 검찰의 남성중심적인 사건 해석과 사법 처리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 사건들의 기본 성격이 정당방위임을 주장했다. 남씨 사건은 사회 전반이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7.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촉발시킨 이씨 구명운동

1) 인적사항

- 피해자 : 이순미(가명) - 아내, 40세
- 加害者 : 정교무(가명, 사망) - 남편

2) 사건내용

1994년 1월 남편의 잔인한 폭력(2시간이 넘게 망치로 TV, 문갑 등 기물을 부수고, 이순미씨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에 시달리던 이씨가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1994. 1. ~ 7.)

사건 다음날, 한국여성의전화는 이씨가 파출부로 일하던 집주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경찰서에 갇힌 이씨를 면회하였다. 면회를 통하여 이씨가 오랜 기간 동안 은폐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사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회는 정당방위라는 점에서 구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이 사건

은 언론의 취재와 관심이 뜨겁게 집중되었다.

이씨 석방을 위한 공동변호인단과 방청인단을 결성하는 등 대책활동에 나섰다. 서울의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수원 지역의 변호사 8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안양, 수원, 서울 등지의 17개 단체가 방청인단으로 참여했다. 방청인단은 편견과 왜곡 없는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재판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재판시 모두가 평화를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을 가슴에 달고 방청, 재판부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다. 또 대규모 방청단을 조직하여 재판을 감시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정당방위와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씨 석방운동은 그녀가 일하던 곳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이웃들이 작성한 탄원서만도 20여 통이 되었다. 이 중 한 탄원서(이씨가 파출부 일을 나가던 집 주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가 한겨레신문(1994. 3. 18) 국민기자석에 실리기도 했다. "그녀는 살인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편에 의해 살인자가 된 것이고 이 여인의 피눈물나는 과거의 행적과 그녀가 당했던 수모를 안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결과만을 보고 이 여인에게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겠느냐"는 탄원서 내용은 재판에 유리한 사회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방청인단과 공동변호인단의 열정적 지원 속에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 성과와 의미

이씨 사건은 무죄 판결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구명운동의 성과는 달성된 셈이었다. 만기 출소 후 이씨는 한국여성의전화를 방문하여, 고마움을 나타내고 자신과 같이 매맞는 아내를 위해 써 달라며 후원금을 내놓았다.

이씨 사건이 발생한 1994년은 UN이 선포한 '세계 가정의 해'였다. ○씨 사건 발생 하루 전 부산에서는 딸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도 일어나 사회는 다시 한번 가정폭력의 끔찍한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본 회는 빈번히 발생하는 가정 폭력사건들을 계기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인식하고, 1994년 5월에 가정폭력추방주간을 선포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8. 구타남편 살해하고 자수한 임씨 구명운동

1) 인적사항

- 피해자 : 임정숙(가명) - 아내, 28세
- 加害者 : 김태수(가명, 사망) - 남편, 32세

2) 사건내용

96년 11월 5일, 임정숙씨가 구타 남편을 살해하고 경찰서에 자수하였다는 지방지 기자의 제보전화가 광주여성의전화(이하 본 회)에 접수되어 경찰서에 사건경위를 알아보면서 구명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 (1996. 11. ~ 1997. 3.)

본 회는 임씨가 살던 집 주변을 탐문해서(1층 주민과 주위 주민들) 6년의 결혼기간 동안 가정폭력이 잦았던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북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임씨 구명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하였다.

본 회는 임씨 가족과 북부경찰서 담당형사와 면담 후 사건 전모와 부검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임씨 사건개요 및 가정폭력 실태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였다. 보도가 나가자 시외삼촌의 항의전화와 시누이 항의전화가 있었다. 그러나 구명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임씨 동네의 주민들의 협조전화들이 접수되어 임씨 사건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가 무료로 변호를 맡아 주기로 하였다.

임씨가 검찰에 송치되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임씨 사건 대책위원회는 KBS, MBC, SBS 9시 뉴스에 보도되었다. 전국적인 연대활동으로 이어져 본회와 대구, 청주, 인천지부, 여성유권자연맹 등 800여명 발신으로 재판장에게 탄원서 및 구타남편살해 정당방위 인정에 대한 서명용지를 제출하였다. 97년 3월 21일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 성과와 의미

결혼생활 6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구타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상해버린 임씨의 구타남편 살해사건을 접하면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명확히 범법 행위이며, 범죄 행위이다. 그

러므로 법 앞에서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법이 책임져주지 못했던 또 하나의 피해자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명활동이 가정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고 법 제정으로 조금이나마 이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

9. 구타남편 살해하고 자수한 김씨 구명운동

1) 인적사항

- 피해자 : 김미옥(가명) - 아내, 51세, 결혼 26년
- 加害者 : 박규민(가명, 사망) - 남편, 56세

2) 사건내용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던 김미옥씨가 12월 14일 저녁 칼을 들고 위협하는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편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직후 김미옥씨는 자수를 하여 경찰 수사 중에 있었으며, 경찰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 안양여성의전화(이하 본 회)는 김씨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상담하고 개입하게 되었다.

6남매의 장녀인 김씨는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남편 박씨는 어려서 어머니와 단 둘이 월남하여 많은 고생을 했고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당하며 살았다. 결혼 초부터 남편 박씨는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으나 술만 먹으면 포악해지고 행패를 부렸다. 이러한 남편의 성격 때문에 김씨는 친정가족과는 전혀 왕래를 하지 못하고 살았다.

결혼 26년 동안 박씨는 해외근무 2~3년을 빼고는 늘 무위도식하였고 집안에 있으면서 김씨를 의심하곤 하였다. 해외 근무 후 허리를 다치면서 더 심해졌고, 간경화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더욱 심해졌다. 김씨는 딸을 결혼시키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집에 둘만 남게 되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 할 수 없어 오히려 피해자인 김씨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하였다.

그러나 이혼 이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찾아와 온갖 행패를 부렸고, 뒷수습을 위해 결혼한 딸과 군대에 있는 아들이 피해를 겪는 것이 반복되곤 하였다. 보다

못한 김씨는 자신의 희생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줄 생각으로 알콜 중독 치료를 조건으로 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되었다. 재결합 후 잠깐 치료를 하던 남편은 곧 치료를 중단하고 변함없는 의심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김씨는 남편의 폭력과 행패가 있을 때마다 맞서거나 함께 싸우기보다는 늘 그 상황을 벗어나 피해 있다가 남편이 잠이 들면 가만히 들어가 자다가 아침에 간신히 출근 하곤 하였다.

사건 당일도 시비를 겨는 남편을 피해 밖에 나갔다가 들어 왔으나 잠이 깐 남편이 식탁에 있던 칼을 휘두르며 다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김씨가 칼을 뺏고 밀치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키가 작은 남편이 절리게 되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바로 쓰러졌고 김씨는 파출소에 가서 “남편을 죽였다”고 자수하였다.

김씨는 ‘살인미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고, 본인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사건은 종결되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운동과정(2001. 12. ~ 2002. 3.)

사건이 발생하자 지역의 여성단체들(4개 단체)과 연대회의를 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구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죄석방을 위한 서명운동과 거리캠페인, 성명서 발표 등의 언론 보도를 통하여 가정폭력의 문제를 알려 내면서, 본회 이사의 무료변론으로 사건을 진행하였다.

4) 성과와 의미

본 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역 내 여성단체가 함께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역 내에서 이슈화할 수 있었다.

또한 본 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변호사의 무료 변론과 사건 초기에 개입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관할 경찰서의 대처는 피해자를 위한 지역 연계망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20여년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오던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게 되며 이는 자기방어적 정당방위 행동으로, 가정폭력의 전형적인 비극적 종말을 보여준 사건임을 부각시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현재 김미옥씨는 출소한 후 본 회를 방문하고 전화연락 등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전에 근무했던 회사 측의 배려로 다시 직장에 다니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결혼한 딸의 출산으로 퇴직하여 외손녀를 봐 주면서 생활하고 있다.

10. 30년간 구타한 남편을 살해한 하씨 구명운동

1) 인적사항

- 피해자 : 하순복(가명) - 아내, 62세
- 가해자 : 박길동(가명, 사망) - 남편, 71세

2) 사건내용

하순복씨는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잠깐을 제외하고 결혼생활 30년 내내 남편 박길동의 폭력과 의처증에 시달리면서 살았다. 첫아이를 낳자 “누구의 아이냐”며 아이를 내던졌으며 목욕탕에서 조금만 늦게 오거나 남편의 시비가 두려워 빨리 집에 가고자 지름길만 가도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며 의심하고 구타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남편이 잠들 때까지 동네 우물가에 숨어있어야 했으며, 남편에게 연탄집게로 얼굴을 맞아 턱이 함몰되고 이가 빠져도 병원에 갈 수조차 없었다. 남편이 무서워 피해 있으면 어린 자식들을 병으로 위협하거나 빗자루로 때리면서 엄마를 찾아오라고 하는 등 온 가족이 폭력의 피해에 시달리며 살았다. 엄마를 그만 때리라고 하는 딸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 딸의 방에 불을 지르겠다는 남편을 만류하는 하씨의 머리 위에 소변을 보기도 하는 등 남편의 폭력은 그 끝이 없었음에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 수 밖에 없었다.

남편이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 하씨는 파출부 등 온갖 궂은 일을 하며 묵묵히 자녀교육과 가정을 꾸려왔으며,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숨이 막힌다고 딸에게 말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에도 남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밥상을 던지며 모욕을 주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는 지난 30여 년간 시달려온 남편의 폭력이 떠올라 남편의 목을 졸라 남편이 숨지게 되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2003. 3. 15. ~ 2003. 9.)

2003년 3월 15일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는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하였고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어 3월 21일 인천구치소에 수

감되었다.

3월 23일, 피해자의 아들이 부천여성의전화(이하 본 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을 의뢰하여 당일 면접상담을 마친 후 중부경찰서에 사건을 확인하였다. 인천구치소에 가서 피해자 면회 및 상담을 하고 가족들과 의논하여 본 회 자문위원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1차 재판이 끝난 후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 여성의전화 지부들과 함께 피해자 구명을 위한 탄원서명운동을 시작했다.

6월 3일, 부천역 광장에서 상담회원들과 실무자들이 부천시민들에게 사건의 내용을 알리고 탄원서명캠페인을 벌여 1,460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 및 서명용지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 아울러 사건의 경과와 탄원서명캠페인을 지역 언론에 홍보하였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아온 고통은 충분히 이해하나 꼭 이렇게 문제를 풀 수 밖에 없었는지 안타깝다며 피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본 회의 설득으로 가족들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본 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면회 가기 및 영치금 모금운동을 시작하였고 실무자와 상담회원들이 단체로 피해자 면회를 실시하였다. 피해자에게 전달된 영치금은 총 11만원으로 작은 금액이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지지가 되었다.

본 회는 가족들과 별도로 또 다시 고등법원에 피해자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남편을 죽인 살인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판결과에 대한 암담함과 밖에 있는 가족들과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피해자는 재판 당일 밤 상고포기를 전하였다. 본 회는 상고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여 상소권회복청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되어 원심대로 징역 3년이 확정되어 현재 피해자는 형 집행 중에 있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은 비록 애초 목표했던 피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끌어내지 못했으나 지역 내에서 최초로 가정폭력문제를 공론화 하여 가정폭력을 단순한 한 가정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1. 딸을 구타하는 사위를 살해한 이 할머니 구명운동

1) 인적사항

- 피해자 : 이 할머니
- 加害者 : 정씨(사망) - 딸의 동거남

2) 사건내용

1996년 5월, 이 할머니가 자신의 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동거남 사위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 할머니의 딸 지은씨는 4년 동안 동거남으로부터 온갖 폭력, 폭언에 시달렸다. 죽은 정씨는 지은씨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기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사건 발생 전 15일간 매일 폭력을 휘두르며 지은씨와 이 할머니를 괴롭혔다.

사건 당일엔 술을 마시며 지은씨의 외삼촌을 칼로 위협하고 장모인 이 할머니에게 “딸 팔아 얼마나 잘 사냐”며 지은씨의 딸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이에 격분한 이 할머니가 사위를 살해하게 되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동네 주민이 관할 파출소에 여러 차례 신고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오지도 않을 뿐 더러, 출동해서 정씨를 연행해 간다고 해도 금방 석방시키고, 사후 대책을 전혀 세워주지 않아 오히려 정씨가 양심을 품고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

처음에는 딸이 죄를 자청해 구속되었다. 이를 괴로워하던 이 할머니는 한국여성의전화(이하 본 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다. 자신이 사위를 살해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본 회는 이 할머니를 면접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변호사와 협의하고 대책 활동에 들어갔다. 이런 노력으로 딸이 풀려나고 이 할머니가 상해치사 혐의로 대신 구속 수감되었다.

5월 ‘가정의 달’에 이 할머니가 구속되자 각 언론사는 이를 대서특필했다. 모든 일간지가 ‘살인범 자청한 70대 모정’ 등의 제목으로 연일 이 할머니 사건을 다루었고, 구명운동과 함께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특집 기사들도 실었으며, 각 방송사마다 최고의 이슈로 다루어 전국은 이 할머니 사건으로 들끓었다.

본 회는 이 할머니 석방운동과 함께 이미 진행시키고 있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나가면서 해당경찰서 앞에서 이할머니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신고를 외면한 경찰의 직무 유기애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정씨 가족들이 그동안 구타 사건을 여러 차례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한번도 출동한 일이 없었다. 집회 후 해당경찰서장을 면담하고,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후 이할머니 석방을 위한 긴급 공청회를 개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 날 긴급 공청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정과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동안 발생했던 가정폭력 사건들을 분석하여 경찰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많은 여성단체들의 구명운동과 사회여론에 힘입어 이할머니는 7월 5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의 범죄적 성격을 분명히 알려내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알려낸 한국여성의전화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돋보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똑같은 성격의 가정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은 조씨 사건은 ‘패륜아’로 매도된 반면, 사위를 살해한 사건은 ‘모정’으로 미화되었다. 우리 사회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가정폭력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살해한 피해여성들과 피해가족들에 대한 구명운동은 여성들의 연대로 사법계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형사법적 관행을 넘어서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녀도 가정폭력의 피해당사자

12. 어머니를 구타한 아버지를 살해한 영수군 구명운동

1) 인적사항

- 피해자 : 조영수(가명) - 아들, 당시 17세
- 加害者 : 조씨(사망) - 아버지

2) 사건내용

1995년 3월,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구타하고 위협하던 아버지를 아들 조영수씨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아버지는 별거 중이던 어머니를 불러내 구두발로 짓밟고 온몸을 마구 구타, 어머니 하씨는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사건 현장에서 조씨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어머니를 구타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순간적으로 살해했다.

어머니 하씨는 결혼 초부터 18년 동안 계속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으며 아들 조씨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거중인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집안 살림을 도맡은 조씨에게 아버지는 특하면 나가라는 말과 함께 칼로 위협하기도 했다. 조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정도로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어머니를 위로하고 모범생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생회 간부로도 활동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

이 사건은 각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당시 언론은 ‘또 다른 아버지 살해’ 등의 제목을 달며 사건 당사자를 패륜아로 몰아갔다. 한국여성의전화(이하 본회)는 사건을 접한 후 인천 중부경찰서를 방문, 피고인을 접견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어머니 하씨도 면접 상담했다. 어머니 하씨는 진작에 이혼하지 못했던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조씨의 어머니와 삼촌이 증인으로 출두, 아들의 구명을 호소했고 본 회는 5,000명이 서명한 구명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호프집 주인도 증인

으로 출두, 사건 당시 조씨 아버지의 폭력 행위를 증언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는 고려대 법대생들이 참관,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학내에서 구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은 당사자가 아닌 자녀가 아버지를 살해했다 하여 중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폭력 가정의 자녀들도 폭력 당사자이며 피해자 어머니와 같은 심리 상태라는 사실을 간파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켰다.

13. 온가족을 구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남매 구명운동

1) 인적사항

- 피해자 : 김경수(가명) - 김홍철의 아들
 김경미(가명) - 김홍철의 딸
- 加害者 : 김홍철(가명, 사망) - 아버지

2) 사건내용

구타와 폭력을 일삼던 김홍철은 요리사로서 평소에도 흥기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문을 잠궈 놓고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자녀들에게 자주 “자식도 소용없다,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경수, 경미 남매는 항상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 항상 폭언과 폭력으로 불안한 집을 떠나 경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충청도에서 방직회사에 다니며 산업체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사건 당일인 1995년 9월 8일, 경미는 추석을 맞아 모처럼 집에 왔으나, 아버지 김홍철은 “얼마나 고생했느냐” “잘 왔다”는 말 대신 “뭐 하러 왔느냐”며 폭언을 하고 발로 차며 폭력을 휘둘렀다. 이를 저지하던 경수의 목을 조르는 아버지에게서 살기가 느낀 경미는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경황없이 넥타이로 아버지의 목을 감은 것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밤 11시 경 집에 돌아온 어머니 박씨는 자식을 살인죄로 신고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시체를 집 근처 야산으로 옮겼고, 그해 12월에야 시체가 발견됨으로써 살

인에 직접 가담한 남매는 구속되고, 막내 여동생은 불구속 처분되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 (1996. 5. 12. ~ 8. 18.)

1996년 5월 12일, 경수 · 경미 남매의 어머니가 전북여성의전화(현 전주여성의전화, 이하 본 회)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였다.

본 회에서는 긴급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남매의 면접을 추진하는 한편 주위 진술을 듣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결론내리고 경수 · 경미 남매의 무죄 또는 최소 형량을 기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5월 25일 1심 공판에서 경수 7년, 경미 5년을 선고받았고, 대책위는 5월 31일 항소하였다. 이와 함께 언론을 통해 존속살인이라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켰고, 재판부에게는 가정폭력의 인성파괴적 위험성을 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폭력가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림으로써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의 폭력을 종식시키는 첫걸음이 되도록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였다.

이에 본 회 후원이사회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전북지역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등 26개 단체가 연대 서명운동에 들입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 11개 지부도 함께 힘을 실어주었다.

1차 공판 후 연대활동에 힘입어 사회적으로 경수 · 경미 남매에 대한 구명여론이 높아졌고, 대책위는 2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8월 14일 2차 공판에는 대책위를 비롯하여 기자들이 함께 방청을 하였다. 재판도중 당시 담당부장판사가 본 회 대표를 호명하여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구명운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묻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이 대표는 “김경수 · 김경미는加害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면서 “가정폭력방지법이 미리 제정되었더라면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켰다.

2차 공판으로 대책위는 힘을 얻고 구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중앙언론(한겨레, 동아, 중앙일보)에서도 사건을 주목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알게 되었다. 1996년 8월 1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경수 · 경미 남매는 최소형량(경수 3년 6월, 경미 소년원 송치-집행유예)을 받게 되었다.

4) 성과와 의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황흔이흔

당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과 전북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으로 인한 ‘존속살인’ 사건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구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주민은 가정 내 폭력을 바라보는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여성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사회단체들과 종교계, 교육계, 여성 의원 등 지역사회의 대대적인 연대를 끌어낸 것 또한 큰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 연대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게 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법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데 (1997. 12) 힘이 되어 주었다.

14. 죽기 전에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이할머니 이혼청구소송

1) 인적사항

- 피해자 : 이순자(가명) - 아내
- 加害者 : 안윤석(가명) - 남편

2) 사건내용

이할머니는 남편과 57년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아들 한 명을 낳았으나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인 1969년 2월 12일에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할머니의 친정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할머니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또한 의처증이 심해서 결혼 초부터 외출, 친지방문을 극도로 제한하였고, 외출을 하거나 밤늦게 귀가하면 사유와 행선지를 따져 묻고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다.

그 와중에도 할머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사채업을 통해 수십 억 원대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1992년 3월 경부터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성당에 나가려고 하였으나 남편은 성당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였고, 할머니는 남편의 반대를 피해 통신교리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은 할머니에게 아들집으로 갈 것을 종용하면서 학대를 하였고, 1994년 8월 경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학대를 견딜 수 없어 아들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 후 할머니는 아들집과 여동생 집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였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한푼 받지 못한 채 생활을 하였다.

이할머니는 1995년 변호사없이 첫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996년 2월에 선고된 1심 판결에서 기각 당하였다. 그 당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형성된 갈등은 피고의 권위적인 태도와 구속에 시달린 원고가 이를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하는 반면 피고는 종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이를 제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일시적인 것 일뿐,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원, 피고의 나아, 혼인기간, 생활 양식 등을 고려할 때 파탄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할머니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996년 11월경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화해가 됨에 따라 할머니가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편은 반성문을 쓸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남편은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관계 없으니 반성문을 잘 써오라면서 할머니를 집밖으로 내몰아 다시 별거를 시작하였다. 한편 할아버지는 할머니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1997년 5월 경 고려대학교에 거의 전 재산(36억 상당)을 기부하였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1998. 9. ~ 2000. 9.)

이 할머니는 97년 다시 조배숙 변호사를 선임하여 2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98년 9월 서울 가정법원(담당판사 : 김선중 부장판사)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고법에 항소한 이 할머니는 서울여성의전화(이하 본 회)에 상담하여 ‘여성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원순, 하승수, 이상훈 변호사가 사건수임을 하였다. 10월 이 할머니는 본 회 면접상담을 한 후 지속적인 상담을 받게 되었다. 여성신문에서는 후원계좌를 개설하고, 본 회는 ‘노인여성인권’에 대한 긴급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2차 재판에 대한 모니터 활동 진행과, 진정서, 탄원서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하여 99년 8월 고법판결 승소(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로 현금 3억과 부동산 1/3)하였고, 할아버지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년여에 걸친 지원으로 2000년 9월 드디어 대법원 승소(재산분할 1/3, 위자료 5천만원) 판결이 내려졌고, 본 회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4) 성과와 의미

재판부는 가정에서 여성의 재산권은 커녕 부부의 재산은 부부공동의 소유란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할머니가 결혼 생활 전반을 통해 고통받아온 가정폭력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할머니가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통한 자기회복을 결정한 가장 큰 원인은 평생을 통해 가정폭력을 당해온 인간으로서의 모욕감이었다.

여성노인의 이혼청구는 여성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김숙자(가명) 할머니의 이혼재판은 폐소하여 노인여성의 인권보다는 가부장적 가족 유지가 우선하는 사회통념의 벽을 실감할 수 있었다.

15. 50년을 죄없이 장기수의 생활을 해온 김 할머니 이혼청구소송

1) 인적사항

- 피해자 : 김미순(가명) - 아내
- 가해자 : 정무돌(가명) - 남편

2) 사건내용

김 할머니는 1923년 출생으로 무남독녀로 태어나 일본 동경실전 여자대학 영문과를 졸업, 미 군정 청학무국에서 근무하다가 1946년부터 덕성여자 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 남편 김무돌과 결혼하게 되었다. 당시 할머니는 초혼으로 사정을 모르는 상태였고, 남편은 세 번째 결혼으로 첫 번째 부인의 소생인 8세 된 아들을 하나둔 상태였다.

결혼 후 남편은 “여자가 나다니는 끝은 못 본다”면서 교장실로 찾아가 사직을 강요, 김 할머니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6·25 후에도 잠시 명성여중에서 교편을 잡을 기회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편의 극심한 행패와 학대로 얼마 계속하지 못하였다.

김 할머니는 그 후 미군부대 기름장수에서 쌀장사, 하숙, 리어카 보관소, 인삼찻집, 담배 가게, 만화 가게 등 생활을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3녀 1남을 키웠다.

남편은 본래 트럭운전을 하다가 김 할머니와 함께 쌀장사, 복덕방을 하기도 하여 수입이 있었으나 “재취는 생활비와 경제권을 주면 안 된다”며 생활비를 주지 않고 생활비를 벌어 쓰라고 하여 김 할머니는 명성여자중학교에 영어교사로 다시 취직을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지 않나 항상 의심을 하였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거적대기로 덮어 장사를 치르라고 할 정도였다.

김 할머니가 가게라도 하며 생활비를 벌 때는 그런대로 견딜 수 있었으나, 남편이 집을 짓겠다면서 할머니가 하던 만화가게를 처분하고, 아파트로 이사 온 후로는 남편은 월 400여 만원의 집세를 움켜쥐고 쌀과 김치 거리를 직접 사주는 대신 월 2만 원만을 생활비로 주고 생활하라고 하여 김 할머니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한 결혼 6개월째부터 계속된 가정폭력과 폭언 이외에도 93년 무릎 인대 수

술과 94년 아들집 충계에서 넘어져 다친 무릎 수술 때 병원비를 주는 것은 고사하고, “밥 할 사람이 없으니 빨리 퇴원시키라”며 거동을 못하는 할머니를 강제 퇴원시키기까지 하였다. 할머니는 수술비와 입원비를 빚을 내어 갚아야만 했다.

그 외에도 할아버지는 부쩍 심해진 의처증으로 자식들이 내 새끼가 아니라고 하며 뚜렷한 근거 없이 할머니를 ‘양갈보’, ‘도둑년’이라고 욕하였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친자확인을 하기 위해 자식들과 함께 병원에 갔지만 할아버지는 진찰 도중 뛰쳐나와 집에 먼저 돌아온 막내딸의 얼굴을 우그러지도록 때렸다. 김할머니는 맞은 막내딸의 얼굴을 보고는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김할머니가 집을 나오기 며칠 전 아들명의로 사둔 부동산이 팔려 잔금 5천 3백만 원을 그 자리에 있던 할머니에게 주어 은행에 넣어두었는데 남편은 김할머니가 집을 나가자 남편은 이혼소송을 내고 김할머니를 절도죄로 두 번이나 고소를 하였다.

김할머니는 남편이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노년의 질병을 치료받기 어렵고, 김할머니가 전처소생의 아들과 불륜관계였다고 하는 등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져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김할머니가 평생을 노력하여 축적한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돼 있어 18억 상당의 재산 중 할머니의 재산 기여도가 50% 이상인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을 포함, 8억여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

97년 5월, 김할머니는 남편의 폭력으로 가출하여 6월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98년 6월, 1심은 할머니가 승소하였지만 남편이 상고한 99년 1월 2심 판결에서는 할머니가 패소하였다. 그 후 최은희 변호사와 함께 항소하여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에 상담을 의뢰하였지만 2000년 2심 판결에서 남편이 승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할머니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이할머니 이혼사건과 김할머니의 사건으로 인해 99년 1월 노인여성의 인권에 대한 긴급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4) 성과와 의미

50년간을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외면당하며

살아온 이들을 법과 재판부도 외면하고 말았다. 이는 병든 남편을 부양하며 더욱 강화되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구원을 요청해야 했던 할머니에게 무기형을 언도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판결은 재판부의 가부장적 가치와 보수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으로, 재판부가 강요하고 있는 '결혼의 의무' '가 여성과 남성에게 얼마나 형평성 없는 시각에서 내려진 판결인지를 뚜렷이 보여주었고, 헌법의 기본권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이혼 사유를 부당하게 차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성별에 따라 이혼결정권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긴 세월을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인습 속에서 희생당하며 살아온 노인여성들의 인권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여성 인권문제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어온 사안으로 노인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켰다.

제2부 실상을 위협하는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

16. 어린이 납치, 성폭력 살해 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김보라(가명) - 8세, 초등학교 1학년
- 가해자 : 이천호(가명) - 40세, 무직

2) 사건내용

1999년 3월 광명시 소하동 기아타운 건설을 목적으로 세운 가설 건축물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보라가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폭행 당하고 살해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 이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광명시 소하동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보라에게 자신이 기르고 있던 애완용 개 두 마리를 데리고 가서 접근하였다. 보라가 “귀엽다”고 하면서 따라오자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가건물을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노끈으로 목 졸라 숨지게 했다. 피해자 부모는 오전 11시 30분에 나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오후 3시 경에 경찰에 미아 신고를 했다. 경찰은 동네 아이들이 이씨가 보라를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해자 집에 있는 친구를 조사하여 3월 29일 밤 10시 쯤 강원도에서 가해자를 검거하였다.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은 가족에게 불성실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대하여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 경찰은 피해자 사체를 광명병원으로 후송한다고 해놓고는 가족에게 연락도 없이 서울장례식장으로 후송하였다. 가족들은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온 몸에 명이 들어 있고 다리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으며 질구를 신문지로 틀어막은 상태였고 목에 노끈으로 졸린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현장검증 때 피해자 가족이 입회하겠다고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도 알려주지 않았고, 사이렌 소리에 현장으로 달려가서 입회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묵살하고 단독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 가족이 경찰서에 가서 항의하자 형사 계장이 폭력을 휘둘러서 피해자 어머니가 맞아 병원에서 3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3) 경과 및 인권운동 과정

이 사건은 피해자 어머니가 서울의 한 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여 광명여성의전화(이하 본 회)로 연계된 사건이다. 사건 접수 후 본 회는 현장 답사 및 촬영, 피해자 부모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것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가족을 소외시킨 진상을 규명하고 가건물을 방치한 기아자동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지역의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협의회는 1차로 성명서를 배포하고 사건 발생 지역에서 2회에 걸쳐 시위를 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 기아자동차를 방문하여 가건물을 방치하여 범죄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이후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경찰이 피해자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점에 대해 경찰서 항의방문을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촉구하였다. 광명시에 대해서는 가건물이 범죄 온상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가족과 함께 재판을 방청하여 힘을 북돋아줬고, 수시로 전화 및 면접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지해 주었다.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가 자기자신을 정신이상자로 규정하여 판결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으려는 것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반론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15년형이 언도되었으나 기아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패소하였다.

4) 성과와 의미

본 회가 창립되자마자 지역에서 처음 접하는 인권 사안이라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사안이 워낙 커서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이미 살해되고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여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당 기관(경찰서, 시, 기아자동차)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재판을 지원하며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원 기간이 길어지고 피해자 부모의 부부갈등이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화되었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재판 건에 힘을 많이 쓸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러나 본 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린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었고 이

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 때 성폭력 피해자 진혼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7. 미 군속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

1) 인적 사항

- 피해자 : 영희(가명), 정희(가명) - 초등학교 3 ~ 4학년 5명, 그 외 다수
- 加害者 : 미군속 M - 59세, 스페인계 남자

2) 사건내용

2000년 4월 8일, 박씨는 오후 늦게 까지도 떨 영희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찾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 정희도 없어진 것을 알고 두 집이 같이 아이들을 찾다가 가출신고를 하였다.

영희 아빠는 아이를 찾았다는 과정에서 정희 엄마에게서 미군에 의한 어린이 성추행이 있다는 얘기를 다른 학부형에게 전해 들었다고 전하였다. 아이를 찾았다는 파출소의 연락을 받고 달려가니, 아이들은 미 군속 M이 준 돈으로 두류공원에 놀러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M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해서 사정한 뒤 돈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두 학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 M집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 앞에서 계속 기다렸다. 밤 12시 전후에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경찰이 집주인과 얘기를 한 후 집주인이 M에게 전화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었고, M을 파출소로 연행할 수 있었다. 순찰차 안에서 M은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파출소에 도착과 동시에 그런 적이 없다고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파출소에서는 M의 신원을 파악하고 남부경찰서에 연락을 취한 후 풀어주었다. 이후 피해 어린이의 학부형들이 학교에 찾아가 교장과 면담을 하니 실태를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4월 10일, 피해자 학부형이 대구여성의전화(이하 본 회)에 면접상담을 요청하였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2000. 4. ~ 2000. 9.)

4월 8일 스페인계 미 군속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4월 10일 피해자 부모

가 대구여성의전화(이하 본 회) 면접 상담을 하였다. 본 회가 피해자 학교장과의 통화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M의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간 여학생들이 고학년은 한 반에 2~3명 정도였고 저학년은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교 후문 근방에 집이 있는 M은 자기 집 앞에서 “비디오를 보고 가라, 과자 줄 테니 놀고 가라”고 아이들을 불러 자기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빨게 하고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는가 하면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성추행을 한 다음 돈, 과자, 학용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도 대답하지 않은 어린이도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 어린이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였다.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도 학교에서 조사할 때 한 반에서 10명 정도가 손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본 회에서는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고 피해어린이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거나, 잘못을 추궁하는 쪽으로 대화를 하지 말 것, 대화내용을 녹취할 것을 가족들에게 당부하였다. 이후 영남대 평생교육원에서 4월 18일 1차 피해자 진술, 4월 22일 2차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졌다.

미군에 의한 범죄라 소파협정에 의해 국내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조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엄한 법적 적용을 촉구하기 위하여 4월 25일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이하 미시모)과 연대하여 「미 주둔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긴급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월 26일 가해자가 한국경찰에 소환되어 조사 중에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미 군속의 자녀도 성추행한 혐의가 발견되었다. 본 회와 미시모가 남부경찰서장을 면담하여 사건의 중요성과 신속 정확한 수사지휘를 당부하였다.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4월 28일).

5월 4일 B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5월 22일 대구 MBC ‘시사기획 오늘’에 방영되었고, 5월 23일에는 ‘미주둔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긴급 시민토론회’를 남구종합복지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본 회와 미시모는 대구지방법원 담당판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7월 12일 재판에서 1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9월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항소심이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은 피해자가 10세 전후의 여아들이어서 고소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이 많아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게 하였고, 피해어린이 부모들을 수 차례 면담하여 심리적 지원을 하였다. 한편 기자 회견, 남부경찰서장 면담, 긴급시민대토론회 개최, 피해어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주변 학교의 성교육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다.

미군에 의한 범죄는 소파 협정으로 국내법 적용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내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다수의 피해어린이가 있음에도 중형이 선고되지 않아 아쉬움은 많았지만 지역에서 이후 제 3의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8. 이웃집 남자에 의한 남자 어린이 성추행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서미나(가명)양 외 5~10세의 남, 여 어린이 다수로 추정
- 가해자 : 도경수(가명)- 30세 중반의 남자

2) 사건내용

2001년 6월 O동 주택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미나는 엄마 심부름으로 가게로 가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팬티에 손을 넣는 성추행을 당했다. 놀란 미나는 집으로 달려와 엄마에게 이야기 하였고, 엄마가 당일 가해자를 바로 찾아가 다시는 성추행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놓으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2001. 6. 11 ~ 2001. 10.)

부천여성의전화(이하 본 회)는 이 사건을 접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변에서 또 다른 피해 아동을 찾도록 설득하였다. 이로써 2001년 6월 11일 5, 6세 된 피해아동 3명이 산부인과에 가서 피해 진단서를 받았다.

진단서를 가지고 피해 가족들이 가해자에게 항의하자, 가해자는 도주하기 위해 이사하였고 오후 집에 있던 짐을 옮기던 중 피해아동 부모에게 알려져 피해

아동 5명의 이름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부천 중부경찰서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긴급 체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본 회는 피해자 부모들 상담을 계속하는 한편 담당 산부인과 의사와의 상담, 순천향 대학병원 정신과 방문 등을 통해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 충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동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밤에 잠을 못 자고 대인기피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한 심리 불안 상태에 있었다.

또한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드러난 피해아동은 여러 명이 더 있음을 알게 되어 본 회는 부천지청 검사실에 주민 탄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7월 25일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다.

4) 성과와 의미

본 회는 맨 처음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 부모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피해자들의 부모들을 일일히 설득하여 가해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여 피해어린이들의 자존감과 상처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제 3의 피해자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부모와 함께 마음을 모으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자칫 패배주의를 낳을 수 있는 성폭력가해자 처벌의 어려운 과정을 딛고 보기 드물게 가해자가 중형을 선고받게 하였다.

근친성폭력

19. 친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손미숙(가명) - 손녀, 19세, 고등학생
- 가해자 : 손수길(가명) - 친할아버지, 80세
 손길성(가명) - 작은아버지, 38세

2) 사건내용

부모의 이혼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8세 때부터 할아버지 집에서 자란 손미숙씨는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시골마을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피해자는 밤마다 할아버지가 몸을 더듬고, 올라타며 포르노비디오처럼 해달라는 등의 성추행에 시달렸다. 가해자는 발기불능이어서 성기삽입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유후유를 바르면서까지 성기삽입을 시도하는 등 강간이나 다름없는 성폭행을 일삼았다. 실업계 고등학교 3년인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참는다는 생각으로 용돈으로 유인하는 할아버지를 참아내며 살고 있었다.

또한 다른 동네에 사는 작은 아버지도 피해자를 5년간 성추행했다. 1995년(중1) 여름방학 때 당시 광주에 살고 있던 작은 아버지는 손씨를 광주로 불러 밭가 벗긴 뒤 구타와 성추행을 행했으며, 1999년(고2) 여름에는 2주일간 산으로 끌고 다니며 “재수 없는 년”이라며 폭력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2000년 5월 7일 작은 아버지가 집으로 오라고 해서 안 가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억지로 보냈다. 작은 아버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집과 집 뒤의 산에서 손씨를 때렸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주인집 아줌마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작은 아버지는 뒤따라와 전화선을 뽑으며 무마해버렸다. 주인아줌마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해서 파출소에 신고했는데 할아버지가 찾아와 오히려 큰소리로 “애가 그런 소리를 하면 타일러 보내야지 뭐하냐”고 호통을 친 뒤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5월 14일 오전 7시 작은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와 가방을 싸라고 해서 두려움에 떨며 옆의 친구 집으로 피신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영광여성의전화(이하 본 회) 회원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본 회 회원은 즉시 파출소에 신고하였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2000. 5. ~ 2000. 12.)

본 회는 피해자를 본 회 회원의 집에 2달여 동안 머물게 하면서 신변을 보호해주고 지속적인 상담을 하였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 쉼터로 연계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폭행과 성추행 상황을 모면하는 정도로 사건이 처리되길 원했고 실업계는 2학기에 취업을 나가므로 두 달여 남은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였다. 학교 측과의 상담과 경찰의 협조로 학교를 10여일 정도 다녔으나 할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 피해자를 끌고 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학교선생님과 상담원이 집으로 찾아가 다른 사람이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동안 상담원이 피해자를 빼내왔다. 그러자 당일 할아버지는 다시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며 교장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작은 아버지까지 연락해서 학교로 오기로 되어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상담원의 설득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경찰은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던 할아버지를 일차 연행하고 조카가 학교에 있다는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학교로 찾아온 작은 아버지도 당일 경찰에 검거되었다.

둘 다 구속되었으나 9월 경 할아버지는 고령임을 감안해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작은 아버지는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몹시 힘들어했으며, 고소 이후 환청, 극심한 불안, 공포에 시달려서 정신감정 및 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심했다. 이 후 서울에 있는 쉼터로 옮겨서 생활하다가 현재는 자립하였다.

4) 성과와 의미

10년이 넘도록 근친으로부터 성폭력당한 피해자의 정신세계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으며 가족을 끔찍히도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리워하는 이중감정으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져 갔다.

오랜 기간 동안의 성추행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왜곡, 위축시켰으며 피해자 자신도 모르게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상담 과정에서 학교 선배에 의한 성추행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가족관계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비밀에 파로워하는 피해자를 달리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많은 사

건이었다.

사건 이후에도 성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혼돈 속에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심도 있는 심리치료와 경제적 지원, 자립을 위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쉼터로 옮긴 후에도 생활전선에 나서야 했고,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20. 친아버지에 의한 세자매 성폭력 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김진이(가명) - 큰 딸, 중3

김명이(가명) - 둘째 딸, 중1

김송이(가명) - 세째 딸, 초6

· 가해자 : 김진석(가명) - 아버지

2) 사건내용

진이는 중학교에 입학하여 가정시간에 성교육을 받고 자신과 두 동생이 아버지에게서 성폭력을 당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진이의 엄마는 아버지의 심한 폭력으로 이혼하였는데 이혼 후 아버지는 매일 밤 “오늘은 누가 아버지와 잘래?” 하면서 세딸을 교대로 성폭력하였다. 성교육을 받기 전에는 진이는 아버지는 누구나 딸에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몇 년후 재혼하였으나 재혼 후에도 성폭력은 계속되었고 새어머니에게도 폭력을 계속 행사하였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이 무서워 성폭력을 제지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위로해줄 뿐이었다.

진이는 이모에게 사실을 털어 놓고 도움을 청하였다. 이모는 즉시 친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친엄마는 전남편을 경찰에 고소하고 인천여성의전화(이라 본 회)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1998.6. ~ 12.)

본 회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엄중처벌해줄 것을 요청하고 가족들과 함께 재판방청을 함께 하였다. 한편으로는 친권박탈을 위한 민사소송

을 진행하였다. 재판부는 세딸을 증인심문하였는데 본 회는 재판부에 셋째딸 송이는 13세 미만이므로 비공개재판으로 해줄 것과 본 회에서 입회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 회의 회장이 심문에 입회하였다.

재판결과 가해자는 15년형이 확정되었으며 친권도 박탈되었다. 세 딸은 친엄마와 살게 되었으나 친엄마는 장사를 하면서 단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 세자매를 돌볼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본 회는 큰 딸을 자원상담가의 집에 위탁 거주하게 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친엄마는 두 딸만 데리고 살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특히 세자매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친아버지에게서 성폭력을 당해왔으므로 장기간의 상담치료가 필요하였지만 큰딸만 상담이 가능하였고 두자매로 인해 가장의 짐이 가중된 엄마는 상담받을 여유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본 회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성과와 의미

이 사건은 조기 성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큰딸이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이 아니었다면 성폭력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본 회는 재판과정을 성실히 모니터링하여 증인심문에 입회하여 판사가 아동폭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나 불신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피해아동이 공포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증언할 수 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후속상담을 제공하지 못해 후유증이 염려되었으나 달리 방도가 없었다.

학교 성폭력

21. 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 사건

1) 인적 사항

- 피해자 : 푸름이(가명) - M초교 3학년, 10세
 가람이(가명) - M초교 5학년, 11세
- 加害者 : 이수복(가명) - M초교 교장, 55세

2) 사건 내용

제천 M초교는 한 학년의 학생이 7~8명 정도인 조그마한 학교로 이교장은 2002년 5월에 부임했다.

이 사건은 학생들이 “우리 교장선생님은 이상하다, 변태다, 화장실 변태”라고 수근거리는 것을 듣고, 교무부장이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다른 여선생님과 이 일을 상의한 후 피해 어린이 6인을 직접 상담하여 비로소 드러났다.

평소 피해자 푸름이와 가람이는 “우리 교장선생님은 이상하다, 징그럽다”라고 부모에게 호소했으나 부모들은 아이의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이교장의 어린이 성추행은 상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피해 아동 중 하나인 가람이가 7월 17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식 없이 나가 돌아오지 않아 부모가 다그치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만 교장실에서 있었다고만 하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가람이의 부모가 최근 아이가 자주 우는 것과 연관해 담임교사와 교감에게 상담하였으나 이교장의 비정상적인 태도와 교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감히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그 이후 더욱 피해를 가중시키게 된 것이다.

2002년 5월부터 9월까지 이교장은 가람이와 푸름이를 상대로 심부름 시킨다는 명목으로 각각 교장실로 오게 해서 피해 어린이의 손, 가슴, 엉덩이, 어깨 등을 만지고 감싸안고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특히 이교장은 가람이에게는 가정환경 조사를 한다는 평계로 부모가 맞벌이하여 거의 집에 없는 점을 악용하

여 피해 어린이 방의 침대에서까지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성기에 비비기를 수차례 하는 등 28회 이상의 성추행을 하였다.

평소 이교장은 조회시간, 운동회 등에서도 공공연히 학생들에게 거지같은 놈, 쥐약 먹었냐며 욕설을 했고 자모회 자리에서도 자신의 손을 성기 모양으로 만들어 가며 음란한 농담을 하여 교장의 자질에 대한 불만족이 학교 내에 팽배해 있었다.

이 사건을 접한 피해학생의 부모와 자모회원들은 이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교장은 강력히 부인하였다. 부모들은 제천교육청에 진상 조사와 교장의 파면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분노하여 부모들은 지역 언론에 사건 전말에 대한 보도 요청을 하였고 학생 등교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게 되었다.

그리고 M초교의 교무부장이 이 사건을 알게 된 당시에는 도교육청이 가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교사들이 평소 교장과의 갈등 때문에 학생, 학부모를 이용하여 꾸민 음모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학생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피해 내용 진술을 반복하게 하는 등 피해 어린이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3) 사건 처리 및 인권운동 과정(2002. 10. 18. ~ 현재)

9월 30일 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의 성추행 상담을 접수한 교사들은 피해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부모들은 교장을 찾아가 자진 사퇴할 것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장은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더욱 분노한 자모회 일동은 10월 11일 제천교육청에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해줄 것과 이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고학년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면 심각한 결과가 나왔겠지만 저학년이야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며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학부모들은 더욱 격분하여 제천 교육장을 면담하여 가해자 이교장의 파면이라는 실질적인 해결을 재차 요구하고 교사들은 평소 이교장의 행태를 규탄하는 등의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전혀 소용이 없자 학생 등교 거부를 하여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충북도교육청은 3차례에 걸쳐 교직원, 학생 대상의 피해 진상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감사팀들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의심하며 반복하여 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일이 커지면 힘들어진다며 은근히 무마하려는 발언을 하여 또 다시 학부모, 어린이들의 원성을 샀다. 이렇게 힘겨운 과정을 겪으면서 피해 증언을 했던 6인의 어린이 중 4명의 어린이가 고소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청주여성의전화(이하 본 회)는 이 사건이 가해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처분은 물론이고 관련기관인 제천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사건으로 지원 방향을 결정하고, 충북지방청 여성 기동반에 이교장을 고소하였고, 이교장은 긴급 체포되었으며, 제천시 교육장과 교육과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에 이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보냈으나 이교장의 구속으로 사건 접수 후 50일 이내에는 대상자 불참인 징계는 무효라는 원칙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자연 연기 되었고 이교장 징계는 법적 처리가 끝난 이후에 할 예정이라는 회신이 돌아왔다.

11월 14일 청주 중심의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었다. 공대위는 학부모와 함께 기자회견과 도교육청 항의 방문을 통해 이교장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한 제천교육장과 교육과장에게 중징계할 것과 시, 도교육청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할 것과 학교성폭력 근절책을 마련하라는 대책위 성명서와 피해학부모 진정서를 전달하였다.

도교육청은 사건 접수 50일이 지난 12월 11일 교도소에 구속 중인 이교장의 서면 답변내용으로 성폭행과 교직원에 대한 폭언을 확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시켰다. 1심 재판 결과 징역 5년이 나왔고 이후 2심에서 피해자 고양 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피해자 그양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하였다 (2003. 8. 29).

무죄 판결 이유로는 그양의 피해 당일에는 이교장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이 확인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방학 중 사택에서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는 이교장의 차가 체류하고 있어 추행이 일어날 수 없는 장소라는 점, 그양이 처음에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담임선생의 추궁과 압력에 의해 비로소 추행 당한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고 고양과 달리 피고와의 대질을 기피했다는 것이 주 이유였다.

9월 16일 가해자 역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당시 제때 조치를 못한 책임을 물어 교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내용, 어린이 성피해자들의 지난 피해에 대한 일관적인 진술요구의 한계와 어린이 피해자가 피고 대질 조사에서 갖

는 심리적인 부담감, 부적절성 등의 반론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4. 성과와 의미

본 회는 피해 상담 접수 직후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 어린이, 학부모들의 피해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여론으로 적극 대처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 이교장의 파면이라는 중징계와 1심에서 5년형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학부모들도 그 동안의 분노, 상처를 조금은 보상받는 듯 했었다. 하지만 2심에서 심각한 피해를 수 차례 당하고도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 성폭력 피해자, 더욱이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이지만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22. 특기 적성교사에 의한 남자어린이 성추행 사건

1) 인적사항

- 피해자 : 10세 남자어린이
- 가해자 : 특기적성교사

2) 사건내용

피해 남자 어린이는 자신을 담당하는 특기적성교사의 집에 놀러갔다가 (극구 자신의 집에 놀러온 것을 권유하였다 함) 포르노사이트를 열어놓고 자신의 몸을 만지고 화면대로 해줄 것을 강요하는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 어린이가 집에 돌아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의 엄마가 어린이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이모가 피해자 부모를 설득하여 부천여성의전화(이하 본 회)에 상담을 의뢰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3) 경과 및 인권운동과정(2003. 6. ~ 현재)

본 회가 상담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미 고소가 접수되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본 회는 지역 내 교육운동 단체와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